

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16. 7. 11.</p>	 <h2 style="margin: 0;">대 법 원</h2> <p style="margin: 0;">Supreme Court of Korea</p>	
	담당부서	양형위원회
	담당자	운영지원단장 구민경 (☎ 3480-1924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

- 양형위원회는 2016. 7. 11. 15:3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『절도,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』을 심의·의결하고,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, 『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』은 추가 논의하기로 함

① 절도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

-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2016. 1. 6. 시행)에서 ①제5조의4 제1항(상습절도)을 삭제, ②제5조의4 제2항(공동상습절도), 제5항(누범절도), 제6항(상습누범절도)을 변경한 입법취지 반영 ⇨ 일반상습·누범절도, 공동상습·누범절도의 법정형이 하향된 부분을 권고형량범위에 반영
- 상습범을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고, 특별가중인자로 반영

②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내용

-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2016. 1. 6. 시행)에서 제5조의4 제5항(누범장물)을 변경한 입법취지 반영 ⇨ 누범장물의 법정형이 하향된 부분을 권고형량범위에 반영
- 상습범을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고, 특별가중인자로 반영

③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내용

- 권고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에 대하여 심의함

- 양형인자 중 '범죄를 실행하는 중 발각,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'를 가중처벌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,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
- 양형위원회 위원들은 양형인자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다음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함

4]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 수정 여부 의결

- 지적재산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함
- 법령 개정으로 법정형 상향 조정 및 산업기술유출행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

5] 향후 일정

- 2016. 9. 5.(월) 16:00 제7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
 -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
 -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
- 2016. 8.경 절도,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게재
- 2016. 9. 15. 절도,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

I. 절도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

1]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

■ 개요

- 현행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2011. 3. 21. 의결되어 2011. 7. 1.부터 시행되고 있음
- 그 후 절도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이하 “특정범죄가중법”) 제5조의4 제1항 중 일부와 제6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, 2016. 1. 6.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에 따라 특

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삭제되고, 제2항, 제5항, 제6항의 구성요건이 일부 변경되거나 법정형이 변경되었음

- 위와 같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,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여부를 검토함

■ 개정법률 주요 요지

[특정범죄가중법]

- 제5조의4

개정 전	개정 후
제5조의4(상습 강도·절도죄 등의 가중처벌)	제5조의4(상습 강도·절도죄 등의 가중처벌)
①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	① 삭제 <2016.1.6>
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	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6.1.6>
⑤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·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.	⑤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·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<개정 2016.1.6> 1.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(미수범을 포함한다)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.	⑥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6.1.6>

- 제9조

개정 전	개정 후
------	------

개정 전	개정 후
제9조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)	제9조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)
<p>①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제1항·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</p> <p>1. 임산물(임산물)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2.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/p>	<p>①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3조1)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<개정 2016.1.6></p> <p>1. 임산물(임산물)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2.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/p>
<p>②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, 제73조제3항 및 「산림보호법」 제53조제2항·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p>	<p>② 삭제 <2016.1.6></p>

[송유관 안전관리법]

개정 전	개정 후
	제13조의2(벌칙)
	<p>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본조신설 2015.6.22]</p>

1) 제73조 제3항이 추가됨.

제73조(벌칙)

- ① 산림에서 그 산물(조립된 묘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09.6.9.>
 1.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묘목을 절취한 경우
 2.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
 3. 장물(贓物)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·조제(造材)의 설비를 한 경우
 4.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
 5. 야간에 절취한 경우
 6.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

■ 양형기준 적용범위의 수정

○ 형법 제332조(상습절도) : 포함

-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으므로, 형법 제332조(상습절도)를 설정 대상범죄에 추가
- 다만, 형법 제331조의2(자동차등 불법사용)가 설정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역시 제331조의2를 제외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,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만을 대상으로 함

○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, 제9조 제2항(삭제) : 제외

○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,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 : 포함

-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은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2항에서 가중처벌하던 조항으로서 원래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었음

○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: 포함

- ‘송유관 내 석유 절도’를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가중처벌하고 있었음

■ 형량범위

○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형량범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공동상습·누범절도	1년 - 2년6월	1년6월 - 3년	2년6월 - 4년
2	상습누범절도	1년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
- 법정형이 각각 ‘2년 이상’(소유형 1), ‘3년 이상’(소유형 2)인 ‘특별재산에 대한 절도’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함

○ 법정형 변경을 반영한 유형 분류 조정 및 서술식 양형기준 삭제

- 법정형 하한이 ‘2년 이상’으로 개정된 범죄 : ‘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’ ⇨ ‘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’로 유형 이동
 -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2호(2년 이상 20년 이하)
 -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(2년 이상 10년 이하)
-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서술식 양형기준 삭제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가치가 높은 재산	1년 - 2년6월	1년6월 - 3년	2년6월 - 4년
2	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	1년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
▷ 2유형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.5배 기중

-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(법정형 변경 : 무기 또는 5년 이상 ⇨ 3년 이상 25년 이하) : 소유형 2에 포섭됨
-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2항 ⇨ 삭제됨

■ 양형인자

○ 상습범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

- 양형기준 전체 체계상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함
 - 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범죄군인 강도, 폭력, 공갈, 손괴 ⇨ 특강법, 폭처법 등 특별법상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는 경우임
 - 나머지 범죄군에서는 상습범을 양형인자로만 반영함
- 상습범 엄벌에 대한 반성적 고려 감안
 -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을 삭제한 입법취지 반영
 - 법정형 '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'이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을 삭제하면서 별도의 상습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지 않음
 - 형법 제332조 ⇨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과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큼
- 상습범 폐지론에 관한 형사법학계 의견 등을 반영
 -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형사정책학적 근거가 약하고, 개념의 불명확성이 크다고 지적하는 학계의 주장이 있음

○ 상습범 :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

-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 중 일부 범죄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⇨ 처리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상습범 가중의 취지를 반영하여,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가장 높은 유형에 상습범 가중을 하는 것이 적정

○ 특수한 수법,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: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,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상습범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

- 기존 상습·누범절도에 있던 특별가중인자 ⇨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면서 위 인자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,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추가
- 다만,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기존 특별가중인자인 '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'와 중복 적용 여지 있음 ⇨ 상습범인 경우와 상습범이 아닌 경우를 분리해서, 추가하는 위 인자는 상습범의 경우에만 적용함

○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: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(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)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

- 기존 상습·누범절도의 경우에 있던 인자임
- 다만, 대유형 2.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'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'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'특별재산에 대한 절도(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)'로 정리

■ 수정된 양형인자표

○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생계형 범죄 ○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(4유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 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(4유형) ○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(상습범인 경우 제외) ○ <u>특수한 수법,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(상습범인 경우)</u> ○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,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○ 처벌불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범죄가중(누범)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○ <u>상습범인 경우</u>
일반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극 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,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진지한 반성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범죄가중(누범)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

○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 형 인 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흉기를 휴대한 경우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○ <u>특수한 수법,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(상습범인 경우)</u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○ 처벌불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범죄가중(누범)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○ <u>상습범인 경우</u>
일 반 양 형 인 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극 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인 이상 합동한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진지한 반성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범죄가중(누범)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

○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 형 인 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수한 수법,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○ <u>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(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)</u>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○ 처벌불원 	
일 반 양 형 인 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계형 범죄 ○ 피해 경미 ○ 소극 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흉기를 휴대한 경우 ○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○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진지한 반성 	

■ 수정된 유형의 정의

[특별재산에 대한 절도]

가. 제1유형(가치가 높은 재산)

- 사회적·문화적·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
 -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
 -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절도
 - 금융기관(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)이 보유하는 현금,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
 -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
 -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

나. 제2유형(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)

- 사회적·문화적·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
 - ~~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~~
 - ~~송유관(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송유관) 내 석유 절도~~
 -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 ~~또는 제9조 제2항에~~ 해당하는 절도
 -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

[상습·누범절도]

가. 제1유형(공동상습·누범절도)

-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-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제2유형(상습누범절도)

○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

II.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

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

■ 개요

- 현행 장물범죄 양형기준은 2015. 2. 2. 의결되고, 2015. 6. 8. 수정되어 2015. 7. 1.부터 시행되고 있음
- 상습장물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, 2016. 1. 6.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, 형법 제363조(상습장물)를 기준으로 상습장물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

■ 개정법률 주요 요지

○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

개정 전	개정 후
제5조의4(상습 강도·절도죄 등의 가중처벌)	제5조의4(상습 강도·절도죄 등의 가중처벌)
④ 「형법」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	④ 삭제 <2016.1.6>
⑤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·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.	⑤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·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<개정 2016.1.6> 3. 「형법」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■ 양형기준 적용범위의 수정

○ 형법 제363조(상습장물) : 포함

-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으

므로, 형법 제363조(상습장물)를 설정 대상범죄에 추가함

○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(삭제) : 제외

■ 형량범위

○ 누범장물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누범장물	1년 - 2년	1년6월 - 3년	2년 - 4년

- 법정형 '2년 이상'을 기준으로 설정된 '특별재산에 대한 장물'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함

■ 양형인자

○ 상습범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

- 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범죄군은 특별법상 상습범 가중규정이 있는 경우이고, 나머지 범죄군에서는 상습범을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는 양형 기준 전체 체계를 고려함
- 상습범 엄벌에 대한 반성적 고려 감안
 -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을 삭제한 입법취지 반영
 - 법정형 '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'이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을 삭제하면서 별도의 상습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지 않음
 - 형법 제363조 ⇨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과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큼

○ 상습범 :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

-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 중 일부 범죄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⇨ 처리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상습범 가중의 취지를 반영하여,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가장 높은 유형에 상습범 가중을 하는 것이 적정

○ 일부 양형인자 수정

- 누범장물 특별가중인자 중 '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' ⇨ '특별재산에

대한 범행인 경우(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)' 로 수정

- 절도범죄 및 일반장물에 대한 양형기준과 체계적합성 유지

■ 수정된 양형인자표

○ 일반장물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○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(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)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○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(2유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○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○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○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(2유형) ○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(2유형)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또는 내부고발 ○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○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범죄가중(누범)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○ 상습범인 경우
일반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본적인 생계·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○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○ 소극 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진지한 반성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○ 특정범죄가중(누범)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

○ 누범장물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(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)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○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(<u>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제외</u>)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또는 내부고발 ○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○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	
일반양형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본적인 생계·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○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○ 소극 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진지한 반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

■ 수정된 유형의 정의

[누범장물]

-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여 ~~같은 조 제4항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~~